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 강화 등〉
■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8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 강화 등	3

I. 개요

1. 서명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8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명옥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2. 3.
- (3) 회 부 일 : 2025. 2.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 법령상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책임자에게 감염 교육을 위임할 수 있어 감염관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의 경우 필수로 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책임자 모두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6제3항).

한편,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위생·안전·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산후

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공표를 의무화하여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15조의20).

Ⅱ. 검토 의견

1.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 강화 등

□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후조리원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경우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과(안 제15조의6제3항)

산후조리원의 평가 및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0).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u>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원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u> <u>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u>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원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하여</u> <u>하고, 그 책임자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④ (생 략)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u>평가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 ----- ----- ----- ----- <u>평가</u> <u>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공표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최근 3년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통계를 보면 결핵을 비롯하여
로타바이러스 등 그 밖의 감염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나 신생아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 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년, 건)

	2021	2022	2023
결핵	2	-	-
로타바이러스	36	22	17
노로바이러스	1	-	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71	78
인플루엔자	-	3	16
코로나19	124	1,159	191
파라바이러스	1	1	-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¹⁾, 이들이 직접 산후조리원에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 교육을 건강관리 책임자가 받게 할 수 있어²⁾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나,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산후조리업자 본인 및 건강관리 책임자 모두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령 체계에서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는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산후조리원의 인력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및 시설기준³⁾에 따라 산후조리원에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⁴⁾,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정기적 교육 대상자이기도 하므로⁵⁾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 지정 의무 및 교육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직접

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 1) 건강관리책임자: 입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3) 간호조무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4) 근무변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4) 해당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종사하는 건강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수해야 하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과 제2항⁶⁾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총괄 책임자로서 해당 의무 부과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교육 의무를 면제한 입법 연혁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 한편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및 그 결과 공표의 의무화에 대하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산후조리원 만족도 및 선택권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공정한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하여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과 평가방법⁸⁾ 개발을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52개 산후조리원 중 206개 산후조리원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나, 평가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6)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7) 종전에는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 없이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2009년 1월 7일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제15조의6제3항이 신설됨.

8) p. 9.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안) 참조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 강화의 취지에 공감하며,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나 둘 이상의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책임자도 산후조리업자에 준하는 교육 수료 필요 ○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 및 공표 의무화 필요
기획재정부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는 일종의 규제 신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평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 필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감염 예방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형식적 규제로 보이며, 현재 시행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 ○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평가 의무화를 위하여는 규제와 더불어 정부 지원 및 보상안이 병행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498

□ 총 6개 영역 83개 평가항목

- '16년 최초 개발된 평가지표는 총 6개 영역 128개 항목이었으나, 산후조리원 컨설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83개 평가항목 조정

평가영역			평가항목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	종사자 교육·계발	1.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다.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있다.
			3. 신생아실에 사진관찰실이 있다.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4. 시설 안전성	4.1	수질 및 실내공기질 관리	1. 수질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정수기를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4.2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또는 계획서)이 있다.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3. 소방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4.3	낙상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III. 운영 및 고객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2.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 또는 제공한다.
			3.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4.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5.2	의료기관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연계·이송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5.3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5.4	리더십	1.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6. 고객관리	6.1	고객관리	1.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불만 및 고충사항을 관리한다.
IV. 감염예방관리			
7. 감염예방	7.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3. 산모에게 손 위생을 교육한다.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1.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세탁물을 관리한다.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7.2	개인보호구 착용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3. 식재료를 관리한다.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5.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한다.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7.3	세탁물 관리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7.4	물품 소독·관리	
	7.5	환경관리	
	7.6	급식관리	
	7.7	종사자 관리	
8. 감염관리	8.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9. 산모 건강평가	9.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한다.
10. 모아애착	10.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1. 부모교육	11.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2. 신생아 확인	12.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13. 신생아 건강평가	13.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4. 신생아 관리	14.1	위생관리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14.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14.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